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며

장애인의 차별 금지법



장애인 인권을 위해
함께 알아보아요!

우송대학교 인권센터

장애인의 차별 금지법

장애인의 차별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등에 관한법률 전문

02

"장애인 차별 유형"



직접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차별금지 영역

고용

모집 · 채용 · 임금 · 승진 · 인사 · 정년 ·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교육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 · 실험 · 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모·부성권, 성 등

임신 · 출산 · 양육 등 모 · 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 · 학대 · 폭력 · 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가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발동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않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
차별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보건가족부 장애인차별 및 상담사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인차별



신고기관



상담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전화: 국번없이 129

홈페이지: www.mohw.go.kr



진정접수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전화: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학대·차별
상담 및신고**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요.
